#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진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402

발의년월일 : 2020년 4월 2일

발 의 자:정진술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정지권, 우형찬, 송도호,

박순규, 추승우, 황인구, 김인호,

송아량 의원(9명)

### 1. 제안이유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될예정이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될예정이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종전의 표현 중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관계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근거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을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된 사항을 반영함.
- 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 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 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신설).
- 사.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 아.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소요자금, 기산 등)을 수정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정함.
- 자.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비함(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5조"를 "지원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5조"로, "지원을 위해"를 "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로, "기여하는"을 "이바지하는"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부착하거나"를 "달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3조 중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로, "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해서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자금"을 "구입 자금"으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기관"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대행기관"으로 한다.

제5조 중 "융자한도액"을 "재정지원 한도액"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는"을 "융자 조건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하"를 "이하의 범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출 일부터 기산, 매년도"를 "대출한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제1항에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를 "시장은"으로,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

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을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하거나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소요되어"를 "들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은행법」제2조제2호"를 "「은행법」 제2조제1항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융자대상업체에"를 "융자대상자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금융기관"을 "수탁은행"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년도"를 "매년"으로, "연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를 "연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하며"를 "선출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개최하는"을 "개최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초과하는"을 "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조정의"를 "조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출 한다"를 "대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 재한"을 "있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후단 중 "응하여야"를 "따라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융자금의 상환 잔여액이 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을 "갚을 융자금이 남아있는 천연가스자동차를 양도하려는"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를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완료하여야"를 "마쳐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부착하여도"를 "달더라도"로, "선행하고,"를 "먼저 실시한 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호"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또는"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법률 제16305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 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의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13호나목에 해당하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의 저공 해화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등) ① 대기관리권역 내 위 치한 공항의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 제목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 각 호의"로 한다.

-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소 규모 배출원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제4장(제21조 및 제2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재원의 확보 등

- 제21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22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의하여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구입재정지원자금"을 "따라 서울특별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원자금"으로, "상환조건에 의하여"를 "상환조건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③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60조또는 특별법 제26조"를 "제60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대기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를 "대기법 제6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특정경유자동차"란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28조의2"를 "특별법 제29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특별법 제25조제1항 및 제4항"을 "특별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법 제25조제6항제2호"를 "특별법 제26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의 2"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	제1조(목적)
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	
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사업 <u>지원과「서울</u>	지원과「서울
특별시 환경기본조례」제5조에	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제5조
따라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u>지원을 위해</u> 필요한 사항을 규	<u>지원 및 「대기관리권역의</u>
정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u>기</u>	<u>의 시행에</u> <u>이</u>
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 바지하는</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	1
보전법」 <u>제60조 또는 「수도</u>	<u>제60조</u>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u>법」제26조</u> 에 따라 인증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u>부착하거</u>	<u>달거나</u> -
<u>나</u>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경	
우를 말한다.	<u>.</u>
2. "이륜차"란 <u>「자동차관리</u>	2 「자동차관리
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u>법」 제3조</u>
중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3. "직화구이 음식점"이란 숯. 〈삭 제〉 가스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육류, 생선류 등을 직접구이하 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음식점 을 말한다.
- 4.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 리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건 | 설기계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의 전환 · 보급, 저공해 조치 또 는 조기폐차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 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 4. ----- 「건설기계관 리법 \_ 제2조제1항제1호---------.
  - 5. "특정경유자동차"라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 6. "특정건설기계"란 「대기관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58조---------- 대해서는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u>한 특별법」</u>---------- 따른다.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서울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 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자금 (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 은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생략)
- 2. 천연가스청소차를 구입하는 서울특별시자치구·청소대행 기관 또는 사업자
- 3. (생략)
-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u>융</u>
  <u>자한도액</u>은 천연가스자동차 보
  급촉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장</u>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에 따라 수립된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
은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 계획
을 세워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u>구입</u> 자
<u> 금</u>
「대기환경보전법」 제58
<u>조제3항</u>
<u>조제3항</u>
<u>조제3항</u>  1. (현행과 같음)
조제3항  1. (현행과 같음) 2
조제3항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소
조제3항  1. (현행과 같음) 2
조제3항
조제3항
조제3항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자금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의 <u>융자는</u> 다음 각 호의 기준에 --- <u>용자 조건은</u> -------의한다. -- 따른다.

- 1. (생략)
- 2. 융자금리 : 연 5퍼센트 <u>이하</u> 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
- 3. 이자계산 및 징수 : <u>대출 일</u> <u>부터 기산, 매년도</u>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 징수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 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 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생략)
- 2. 연료 공급가격 변동으로 천연가스자동차의 운영비용이동종의 경유자동차보다 많이소요되어 경쟁력을 상실한 때3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 저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

<u>융자 조건은</u>
<u>따른다</u> .
1. (현행과 같음)
2 <u>াট</u>
의 범위
3 <u>대출한</u>
날부터 계산하고, 매 해
② 시장은
<u>호</u> 에 해
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융자
한 자금에 대하여 이자를 감면
하거나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
<u> 장하는</u>
1. (현행과 같음)
2
같은 종류
들어
③
따른다.
 게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 의 일부를 「은행법」제2조제2 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 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 은행"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 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 게 정한다.
- ② <u>수탁금융기관</u>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지 원자금대하차용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 지고) 시장은 <u>매년도</u>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u>연</u> <u>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u>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 4. (생 략)
-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지 ①・② (생 략)
  -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 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차량공 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 스정책과장 및 다음 각 호의 자

	<u>'은행법」 제2조제</u>
	1항제2호
	<u>융자대상자에게</u>
	② <u>수탁은행</u>
제	·  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
•	고) 매년
	도의 재정지원계획을 세우고 -
	·.
	1. ~ 4. (현행과 같음)
제	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선출하며</u>

로 한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 개의(開議)--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⑤ 심의회는 개최하는 때마다 ⑤ ----- <u>개최할</u> -----구성 · 운영하고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제11조(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총괄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에 따 라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 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 ---- 조정 -----고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 제13조(융자금대출) ① -----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 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

- 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자금을 대출 한다.
-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 시에 <u>소재한</u> 수탁금융기관의 본 ·지점으로 한다.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지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원받은 자금의 적정사용여부 등을 연 2회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u>융자</u> 금의 <u>상환</u> 잔여액이 있는 천연 가스자동차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 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자동차는 <u>「수도권 대기환</u>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

<u>대출한다</u> .
②
<u>있는</u>
·.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u>따라야</u>
② (현행과 같음)
③ <u>갚을</u>
융자금이 남아있는 천연가스자
동차를 양도하려는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
동차의 종류)
「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30조제1호

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 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출고 당시 <u>「대기환경보전</u>법」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 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u>날로부터</u>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 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 법」제63조제1항에 따른 <u>배출</u> 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 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에는 시장은 저공해 조치 기간 을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

 1. (현행과 같음) 2 <u>「대기환경보전</u> 법」 제2조제16호
<u>날부터</u>
<u>배출</u> <u>가스 정밀검사 결과</u>

하인 차량은 차기 검사기간)까 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u>날로부터</u> 2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u>완</u>료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 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 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
  동차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
  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
  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거나 융자할 수 있다.

<u>.</u>
③
ıl님r]
<u>날부터</u>
<u>마</u>
<u>쳐야</u>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
치 권고) ①
달
트 더라도
212122
<u>먼저 실시한 뒤</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대기관리권역의 대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u>30조제1호</u>

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수도 ②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 한 특별법 | 또는 ------

> 제19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 한 지원) 시장은 「대기관리권 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 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용도 자동차(법률 제16305호 대기관 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의3(특정건설기계 등의 관 리)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_ 제31조에 따라 특정건설기계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 호나목에 해당하 자동차 중 특 정경유자동차의 저공해화계획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9조의4(공항의 대기개선계획 에 대한 승인 등) ① 대기관리 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항공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 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1. 건설기계

2. 이륜차

3. 직화구이 음식점

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는 「대기관리권역 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계 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개 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 ① 시장은 생활주변 소규모 배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 출원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 방기기의 제조・공급 또는 판 매 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 는 난방기기는 제외한다)

- 2.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유기용제 를 사용하는 시설로 한정한 다)
- 3. 연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 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직접

#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 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 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 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 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신 설>

<신 설>

<신 설>

매물시는 소비소 매물전에 네
한 방지시설 설치명령
<u>&lt;</u> 삭 제>
② 제1항 각 호의

베츠디노 人그ㅁ 베츠이세 테

제4장 재원의 확보 등
제21조(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
선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
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
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특별
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등)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의4를 신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공항운영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대기개선계획을 세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1항), 시장은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제2항)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대기개선계획이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본 조례개정안 제19조의2에서는 시장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경유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특정용도 자동차(어린이 통학버스, 운송 사업 화물자동차)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제22조에서는 시민이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 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하여 비용이 발생하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운송용 화물자동차의 LPG차 전환지원사업과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 사업은 서울시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

[기 시행사업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근거	예산과목	2019년	2020년
제19조의2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380,000	1,500,000
	LPG 화물차 신차지원	200,000	4,000,000
제22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350,600	340,600
	환경의 날 운영지원	54,000	147,680
	서울 환경에너지 정책 홍보	1,144,029	547,453

- 그 외의 개정 조항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 명 및 근거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개정조례안 제19조의4에서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공항의 공항운영자가 대기개선 계획을 세우고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장은 대기개선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항운영자가 수립한 대기개선계획이 없어 사업규모나 지원예산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분석관(주무관) 공도연

**2** 02-2180-7933

e-mail: ehdus0@seoul.go.kr